

김제시 공고 제2023-619호

「김제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「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10월 18일

김 제 시 장

**김제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
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**

1. 개정이유

- 「의료급여법」에 따라 보호대상자에 대한 의료보호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김제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의 존속기한('23.12.31.)을 5년 연장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(안 제9조)
 - 2023년 12월 31일 → 2028년 12월 31일

3. 의견제출

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나 개인은 2023년 10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김제시장(참조:주민복지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의견 제출사항

- (1)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이유)
- (2) 의견제출자의 성명(기관·단체인 경우에는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
나. 의견 제출할 곳: 우편번호54386/김제시 중앙로 40(서암동, 김제시청) 주민복지과(전화: 063-540-3441, 팩스: 063-540-3466)

다. 의견 제출 방법: 서면·전화·팩스·직접방문·컴퓨터통신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

4.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김제시청 주민복지과 기초생활보장팀(전화: 063-540-3333)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붙임 : 입법안, 신·구조문대비표

김제시 조례 제 호

김제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김제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 중 “2023년 12월 31일”를 “2028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9조(존속기한) 특별회계의 존속기 한은 <u>2023년 12월 31일까지</u> 로 한 다.	제9조(존속기한) ----- ----- <u>2028년 12월 31일</u> ----- -----.